

노회찬 의원의 장애인·인권 분야 활동 정리

- 노회찬재단 -

○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음. 그렇기 때문에 장애계는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는 논평을 통해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 쟁취,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싸웠던 의원"이었다고 밝혔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영원한 벗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한다. 노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도 언제나 함께했다"고 밝혔음.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故김주영 동지 장례를 비롯해 각종 장애계 투쟁 현장에 찾아와 연대발언을 했고, 활동가들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에도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회고했음.

○ 노회찬 의원은 2005년 9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고, 2007년 3월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제정되는데 앞장서는 등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규범을 정착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당시의 입법연구 성과를 반영한 제정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하고자 했음. 또한, 입법 과정에서 타 정당 국회의원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17대 국회가 장애인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에도 일익을 담당했음.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의 사무국장이었던 박옥순 전장연 사무총장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노 의원이 장차법을 대표 발의 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만든, 장애인의 법이었다. 이 법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노 의원이 이러한 장애계의 의견에 동의해 대표 발의를 한 결과, 복지부 역시 이 법안에 기반한 법안을 만들게 되었다. 노 의원 덕분에 장애인의 경험이 담긴, '우리의 법'이 반영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 노회찬 의원은 2017년 1월, 장애인의 관광활동보장을 위해 앞장섰으며 입법 성과를 이뤄냄.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음. 이 개정안은 2017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폐기)했음.

또한, 노회찬 의원은 2017년 1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복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지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했음. 이 개정안도 2017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폐기)했음.

○ 노회찬 의원은 2017년 6월,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했음.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또한 다수의 후보와 사회자가 참가하는 선거방송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 1인이 모든 대화를 통역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선거인이 토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더욱이 수어 통역 화면이 작게 송출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이 시청하기에 불편함을 초래함.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주요 대표 법안발의 및 활동>

- 2005년 9월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
- 2005년 12월 3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전국 투쟁 결의대회'
- 2006년 12월 6일 장추련과의 간담회
- 2006년 2월 2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소망 날리기' 행사 진행.
- 2006년 6월 23일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 간담회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제5항을 전제에 두며,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안마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법외지 밝힘.
- 2006년 9월 18일 '사례를 통해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 2007년 1월 29일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함을 공동(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으로 촉구
-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에서 의결

-2007년 3월 16일 장차법 제정 축하연('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에서 장추련의 감사패 수상

-2016년 7월 20일 기아자동차 '2016 하모니 원정대 참박소탐'간담회

-2017년 1월 12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7년 1월 12일. 장애인 관광권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7년 6월 8일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2월 10일 인권의 보호·신장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